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가족위원회 규정

2016.09.29. 제정

제1조(설치) ①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정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도 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가족위원회를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선수가족 관련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국내·외 종합대회 및 국내·외 종목별 대회의 개최 및 참가 등 사업의 지원·후원·협력에 관한 사항
2. 스페셜올림픽을 선수가족에게 알리고 참가를 홍보하고 독려하는 사항
3. 가족위원회 위원 및 회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4. 찬조 및 후원 등 외부 지원자의 섭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6. 기타 가족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 ① 위원회의 회원은 한국스페셜올림픽 활동에 참여하는 선수가족으로서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본 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② 선수의 가족이 아닌 자나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임무) ①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② 위원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제6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상벌) ①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임원)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3. 총무 1인
4. 위원 15인 이내(위원장 1, 부위원장 2, 총무 1 포함)
5. 시·도의 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9조(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임원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시·도의 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 및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도의 임원도 ①, ②호와 같다.

제10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제14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